

의안 검토보고

의안 번호	제147호		
건 명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안(출)자	서초구청장	제안(출)년월일	1998. 4. 1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윤복영		

1. 검토내용

가. 폐지이유

- 공중위생법시행령(1996.6.29 대통령령제15091호) 및 동법시행규칙(1996.8.20 보건복지부령 제32호)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징수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동법시행 규칙 제4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도록되어 있어 1994. 1. 11. 조례 제236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를 폐지함.

다. 관련법규

- 공중위생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2

2. 검토결과

- 공중위생법 제43조 과태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려면 세부적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나 제43조는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으며 또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적용할 수 없어
- 서초구에서는 '94.1.11 조례 제236호로 서울특별시 서초구공중 이용시설 과태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 '95. 12. 29 공중위생법 제43조(과태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96. 6. 29 공중위생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및 '96. 8. 20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 과태료 징수의 절차에 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토록 되어 있음으로서 서초구 조례는 폐지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본 폐지 조례안은 '98. 3. 25 우리구 조례정비특위에서 폐지안으로 상정하여 심사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심의할 사항입니다.

3. 관련법규

- 별 첨

공중위생법 제43조(과태료) 관련사항

공 중 위 생 법

제 43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후단(제14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자명단의 비치·기재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제조업자
5. 제20조 제1항(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21조 제2항(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항 또는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정·개선 또는 제정명령에 위반한 자
7.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관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9.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지 아니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위생관리 담당자
10.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공중위생법 시행령 관련규정

공중위생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시행 규칙
<p>제2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p> <p>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처분권자"라 한다)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2와 같다.</p> <p>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개정 96. 6. 29></p>	<p>제43조의2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p> <p>영 제 1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영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 사무 처리규칙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개정 96. 8. 20></p>